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

꼼꼼한 평가로 ‘실속’ 뒷받침 해야, 가족법 개정, 고위직

김영삼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 남았다. 3년 8개월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정책,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92년 대선당시 민자당이 내걸었던 여성관련공약은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각종 법

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개선한다'로 시작하는 62항에서 시작해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69항까지 총 8항목 32개 조항이다.

이 가운데 보육시설 설치와 여성의 고용촉진책, 특수교육

기관문화개방, 교육비 재정확대, 늘어선 급식실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지원공약은 비교적 실적이 뚜렷했으며 여성정책특별위원회설치, 고위직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등은 실적이 부진했다. 가족법 개정, 노인여성의 사회지원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 (평가는 신한국당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14대 대선공약 관련 민생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여성계 인사 10명의 인터뷰 결과, 여성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10대과제' 발표를 가장 큰 성과로 꼽

았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노동, 인권, 복지계획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인사들이 가장 잘 실천되었다고 평가한 공약은 보육시설확충계획과 공무원 7.9급 10% 채용목표제였으며 가장 잘 안 지켜진 공약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설치,

고위직여성정책결정과정참여, 가내근로자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마련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여성공약 8개항목 32개 조항 실적과 여성계인사 10명의 평가를 차례로 신는다.

대선 여성관련 공약과 추진실적

항목	추진실적
62항.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각종 법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개선한다.	
1.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정부부처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설치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로 대체했다.
2.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완 강화하고 가족법을 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95년 8월 2차개정.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조건 등 채용조건 제시 금지, 임금 이외 금품 지급 등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규정 등이 주요 골자. 2차 개정에서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간접차별금지 조항은 개선되지 않아 현재 3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안 개정전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95년 9월 개정. 가족법 개정 안됨. 95년 5월 서울가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동성동본불혼제도 위헌제심을 청구, 현재 계류중.
3. 시간제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96년 10월 시간제 근로자 보호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결정. 가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강구되지 않았다. 94년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서 96년이내 가내근로자보호법 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가내근로자 실태조사 파악되지 않았다.
4.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공적기준으로 반영한다	4.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94년 4월 주부가사노동가치의 적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간담회 결과가 제도화 되지는 못했으며 관련법에 적용기 위한 부처 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소득은 없는 편.
5. 여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급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5.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94년 12월부터 대학생 취업 알선 정보센터 설치 운영.
63항. 여성인력의 개발과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6. 3군사관학교 등 군사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해 여성전문가를 양성한다	6. 95년 7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운영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면서 구체화됨. 세무대, 경찰대 철도전문대의 여성입학 비율을 확대하고 공군사관학교는 97년부터, 육사는 2천년 이내 입학정원의 10%이상 허용하기로 결정.
7. 시 군 구단위에 여성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7. 전국 내무부 산하의 시군구와 노동부 46개 지방사무소에서 여성의 취업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센터는 설립되지 않았다.
8.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 장려책을 도입한다	8. 95년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공기업 채용시 인센티브제 도입'과 '5·7급 공무원 채용시 현 여성채용목표제실시' 등 여성의 사회참여 10대과제를 발표했다.
9. 채용에서 승진,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전반에 걸쳐 모든 차별관행이 제거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9. 93년 은행,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실시. 94년 5백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행정지도. 95년 3백인 이상, 96년 2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 97년 1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계획.
64항. 각계각층 여성을 위한 복지를 내실화한다.	
10. 주부, 근로여성과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한다	10. 보건복지부 97년 예산안에 종합복지관 설치비가 반영.
11. 교육제정을 대폭 확충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11. 교육개혁위원회가 95년 8월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98년까지)' 확정.
12. 농어촌여성의 과중한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중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12. 초등학교 95년 4천7백95교(83.1%)에서 급식 실시.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경우 1천6백2개 가운데 95년 52개교(3.2%), 96년 2백62개교(19.6%)에서 급식 실시. 교육부 97년 5백4개교(51%), 98년 7백84개교(100%)에 급식실시 계획.
13. 저소득 모자가정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영세민자녀대상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13. 공공임대주택 용자금을 1천5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인상. 재개발임대아파트는 호당 1천만원 용자. 사원임대주택은 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신설됨.
14. 노인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보건시설을 정비하며 재가의료서비스를 보급한다	14. 재가노인봉사센터 1백40개소에 4백6억9천만원 지원, 무료 유료양로시설 설치확대 및 입소조건 완화, 경로당 증설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는 향상됐으나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은 없다.
65항. 여성의 사회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 촉진한다.	
15.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축진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15.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에서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

항목	추진실적
	료보험을 통한 출산급여의 사회분담안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으로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16. 전업주부들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시간제 취업, 재가근무,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 정착시킨다	16. 정무2실이 94년부터 전국 2백31개 시 군 구에 2백49개의 지역별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17. 고위정책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시키고 각급 의회의 여성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인다	17. 초기 여성장관 3명 기용.
18.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 참여를 대폭 늘린다.	18. 96년 현재 신한국당 당원 36만명 가운데 여성은 18만명(50%), 고문은 13명 가운데 2명(15.4%), 당무위원은 49명 가운데 3명(6.1%), 정책자문위원은 4백76명 가운데 12명(2.5%), 지구당위원장은 2백53명 중 2명(0.8%), 중앙상무위원은 1만2천8백92명 중 1천5백25명(11.8%), 기초의원은 2천7백29명 가운데 29명(1.1%), 광역의원 3백39명 중 30명(8.8%)이다. 여성당원은 많으나 고위직 여성비율은 극히 적은 비율이다.
66항.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한다.	
19. 교과과정의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기부터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토록 지도한다	19. 제6차 교육과정에 반영. 95년 각 학교별로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지도.
20.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하고 국공립 연수기관에 평등의식 프로그램 실시를 의무화한다	20. 25개 국공립연수기관에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전국중등교장 자격연수회에서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특강 실시. 96년 교원연수지침 수립 시달시 교사에 대한 남녀 평등의식을 교육과정에 반영.
21. 평등한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 등 성인 대상 평등의식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한다	21. 성인대상 <남녀평등의식 강의사례집> 96년 5월 발간.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93년 발간.
22. 대중매체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2. 96년 11월 정무장관(제2)을 위원장으로 한 성차별개선위원회(위원 9명) 구성.
67항.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23. 현재 6천2백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 4천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한다	23. 93년 5천4백90개소, 94년 6천9백75개소, 96년 6월 현재 1만7백87개소, 97년 1만3천7백개소로 증대 계획. 94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안에서 시설증대계획이 조정됐다.
24.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교원탁아소를 설치한다	24. 95년 3월 제2종합청사에 부지 2백평, 시설규모 3백평, 보육정원 2백명 규모로 보육시설 신축공사를 착공. 11월 완공돼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5. 보육시설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25. 보육시설운영비 94년 5백22억원, 95년 6백44억원, 96년 8백94억원 투자. 97년 예산안에는 1천74억원이 반영돼 있다.
26.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한다	26. 보건복지부 95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육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세제혜택 및 기부금 손비처리를 인정.
68항.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	
27.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27. 성폭력특별법 94년 제정. 친고권 폐지 및 친족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여성계 및 각 정당의 개정 요구가 높다. 올해안 개정 확실시.
28.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 에 설치 운영한다	28.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보호시설은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 각각 한곳씩. 재정 지원을 받는 상담소는 서울 3곳, 지방 1곳.
29. 대중매체 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여 여성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9. 성차별개선위원회 96년 11월 '대중매체 성차별적 편견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차별 평가기준 발표.
69항.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착시킨다.	
30. 미래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한다	30. <신나는 아이들>, <자녀의 진로 어떻게 도와줄까> 94년 발간.
31. 가족상담 등 서비스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한다	31. 결혼가족 생활실태조사사업 실시중
32. 세대간 대화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32. 93년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